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노종면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86

발의연월일: 2024. 06. 20.

발 의 자:노종면・황명선・복기왕

이훈기 • 이강일 • 박성준

조승래 • 박상혁 • 허종식

진선미 • 모경종 • 정을호

민형배 • 김윤덕 • 김교흥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역사랑상품권(지역화폐)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되살리고,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경제 정책임. 이미 수 많은 사례와 연구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(지역화폐)의 효능이 입증되었으며, 주민 실생활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음. 실제로 2022년 기준 연간 발행 규모가약 29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하였음.

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(지역화폐)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예산 지원이 의무화되어있지 않고, 할인율도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정하도록되어있음. 때문에 효능성이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정책결정권자의결정에 따라서 발행규모와 할인율이 변화하는 등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지역사랑상품권(지역화폐)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상공인 • 골

목상권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, 국가 및 지자체의 지역사 랑상품권(지역화폐) 예산 지원과 할인을 의무화하고, 할인율을 15% 이상으로 의무화 하되, 인구, 재정 자립도에 따라 완화하고자 하는 것 임.(안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단서 신설). 법률 제 호
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 중 "할 수 있다"를 "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할인율은 100분의 15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인구 및 재정 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. 완화 기준 등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	제15조(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
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	지원) ①
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	
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	
발행・판매・환전 등 운영에	
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	
<u>할 수 있다</u> .	<u>하여야 한다</u> .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	②
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	
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	
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	<u>이 경우 할인율은</u>
	<u>100분의 15 이상으로 한다. 다</u>
	만, 인구 및 재정 자립도 등을
	고려하여 그 기준을 완화할 수
	있다. 완화 기준 등 필요한 사
	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